



제429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 의무화 〉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00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	3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정복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24.
3. 회 부 일 : 2025.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지침 없이 약학사 학위가 자율적으로 수여되어 온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
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Ⅲ. 검토의견

1.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¹⁾에 맞춰 현행법에도 의학·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평가 등) ① (생략)	제11조의2(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 <u>한의학</u>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한의학·약학 또는-----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 「약사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나. 검토의견

- 양질의 약사 배출과 의료인 등 유사 전문 자격제도와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약사법」이 시행(2025. 4. 8.)된 바 있음.
- 「약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현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과 무관하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면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최근의 개정 「약사법」 시행에 맞춰 현행법에도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법률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2022년)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아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이미 해당 기관으로부터 한차례 이상 인증을 받은 바 있음.²⁾

2)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37개교) 중 36개교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한차례 이상 인증을 받았으며, 경성대학교는 '25년 평가를 진행 중에 있음.

[참고 1] 약학 교육과정 인증 현황

-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37개교) 중 36개교는 한국약학교육
평가원으로부터 한차례 이상 인증을 받았으며, 경성대학교는 2025
년 평가를 진행 중에 있음.

[약학 교육과정 인증 현황]

구분		대학	인증기간	비고
1	2020년 인증	가천대	2021.1.1.~2025.12.31.(5년)	25년 평가 진행중
2		계명대		
3		고려대		
4		삼육대		
5		이화여대		
6		충남대		
7	2021년 인증	경상국립대	2022.1.1.~2026.12.31.(5년)	26년 평가예정
8		대구가톨릭대		
9		덕성여대		
10		성균관대		
11		숙명여대		
12		원광대		
13		전남대		
14		조선대		
15	2022년 인증	단국대	2023.3.1.~2028.2.28.(5년)	
16		동국대		
17		목포대		
18		순천대		
19		영남대		
20		중앙대		
21		차의과학대		
22		동덕여대	2023.3.1.~2026.2.28.(3년)	25년 평가 진행중
23	2023년 인증	가톨릭대	2024.3.1.~2029.2.28.(5년)	
24		강원대		
25		경희대		
26		연세대	2024.3.1.~2027.2.28.(3년)	
27		우석대		
28		인제대		
29	2024년 인증	경북대	2025.3.1.~2030.2.28.(5년)	
30		부산대		
31		서울대		
32		아주대		
33		제주대		
34		충북대		
35		한양대		
36		전북대	2025.3.1.~2028.2.29.(3년)	
37	-	경성대	미인증	25년 평가 진행중

자료: 교육부

- 개정 「약사법」 제3조에 따라 인정기관의 인증 여부와 약사자격면허가 연계됨에 따라, 개정안으로 인해 평가·인증대상 대학 수나 평가기준 및 내용, 절차 등의 변화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³⁾
- 교육부 및 한국약학평가원은 개정 「약사법」(2025.4.8. 시행)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의학·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은 공통적으로 「의료법」 제2조제1항⁴⁾에서 정한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문분야이므로, 현행대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순으로 유지하고, 그 이후 약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8

3) 다만, 대학의 평가 (재)신청 시기와 인정기관의 인증여부 결정 시기 등에 관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평가 일정 및 시기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 의사·한 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